

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

- 이 내용은 2009년도와 달라지는 주요시책을 정리한 것임.
- 2008. 12월 현재 관계법령의 제·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음.

2009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요령 마련	o 숲가꾸기 사업은 2~3 개월이 소요되며, 준공 검사 후 사업비 지급	o 숲가꾸기 사업을 1개월 단위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, 2~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선금(계약금액의 50%)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령 마련	시 책 ('09.1.1)
			산림청 자원육성과 (042-481-4218)
□ 산림사업 유경험자 활용	o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추진 시 작업반장을 일반인 중에서 선발하여 추진	o 산림관련 퇴직공무원, 산림조합·중앙회 퇴직자를 대상으로 근로 인원의 10%이내에서 선발하여 현장관리인력(작업반장)으로 활용	시 책 ('09.1.1)
			산림청 자원육성과 (042-481-4218)
□ 공공산림 가꾸기 지방비 부담 확대	o 국비 70%, 지방비 30%	o 국비 60%, 지방비 40%	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('09.1.1)
			산림청 자원육성과 (042-481-4218)
□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속성경제수 조림	<신 설>	o 경제수조림과 특용수조림 병행실시(사유림) - ha당 450만원 -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	시 책 ('09.1.1)
			산림청 자원육성과 (042-481-4185)
□ 바이오순환림 조성 확대	o 국유림 시범조림 : 50ha	o 국유림 확대 : 200ha - 묘목대 포함 시설비 편성(ha당 510만원) o 민유림 신규 : 1,300ha - 경제수일반조림, 생태조림, 속성경제수 조림을 활용하여 추진	시 책 ('09.1.1)
			산림청 자원육성과 (042-481-4185)
□ 유휴토지 조림 확대	o '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'에 의한 한계농지 나무심기	o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생복구 추진 - 마을공한지, 도심지 자투리땅, 녹지조성지 등에 나무심기 확대	시 책 ('09.1.1)
			산림청 자원육성과 (042-481-4185)
□ 종묘정책 자문회의 운영	o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심의회 운영(연1회) *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심의위원회 규정 폐지 ('08.11.26)	o 종묘 정책 자문회의 운영(수시)을 통해 종묘가격 결정 및 정책자문	시 책 ('09.1.1)
			산림청 자원육성과 (042-481-4189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품종보호 대상품목 확대	○ 산딸기, 밤, 대추, 표고버섯 등 16개 품종	○ '복분자딸기류('12)를 제외한 전 품종으로 확대	농림수산식품부고시 ('09.1.1)
			산림청 자원육성과 (042-481-4189)
□ 산림유전 자원관리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을 지정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책임기관 :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소속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 - 관리기관 : 책임기관이 산림유전자원 관리 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리기관 지정 신청서를 받아 책임기관의 장이 지정 여부 결정 ○ 산림유전자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 	농업유전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'09.1.1)
			산림청 자원육성과 (042-481-4189)
□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보조율 조정	○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 보조율 : 70%	○ 보조율 60%로 조정(지자체보조 40%)	산림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지침('08.12)
			산림청 산림고용팀 (042-481-4037)
□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단가 인상	○ 산림서비스 증진 단가 : 40,000원/1일	○ 산림서비스도우미 단가 : 41,000원/1일로 인상	산림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지침('08.12)
			산림청 산림고용팀 (042-481-4037)
□ 임업기능인 교육훈련보조비 지원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훈련보조비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유림 영림단(300명) : 40만원/1인 - 산림조합·법인 영림단(700명) : 20만원/1인 	시 책 '09.1.1)
			산림청 산림고용팀 (042-481-4188)
□ 산림분야 세제	○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분리과세 또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분리과세 또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 <p>※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1840(2008.10.29), 안건번호 08-0321</p>	'08.10.29
			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191)
□ 임업인 안전공제	○ 재해보상금 30백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해보상금 50백만원(단일상품) <p>※ 잠정안</p> 	농림수산업시행지침 ('09.1.1)
			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037) 농림부 농업금융과 (02-500-1756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(융자대상사업 확대)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립자연휴양림조성사업 ○ 임업기계화(임업기계장비 생산자금) ○ 단기산림소득지원(밤나무 노령목관리, 친환경 밤생산, 밤·잣 생산장비, 조경수 관정시설, 임산물 표준 출하, 임산물표준 출하, 공동 선별비 지원,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) ○ 해외산림투자지원(벌채, 조림·벌채에 수반되는 임산물가공시설) 	농림수산업시 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177)
□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(이차보전 대상 융자금의 취급절차 간소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월 산림청으로부터 융자 한도액 배정승인을 받은 후 산림조합에서 대출 시행 ○ 이차보전 대상사업에 한하여 연간 총 융자 한도를 배정하면 집행전 별도의 융자한도 승인 절차 없이 산림조합에서 자체 대출 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출로 임업인의 편의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차보전 대상사업에 한하여 연간 총 융자 한도를 배정하면 집행전 별도의 융자한도 승인 절차 없이 산림조합에서 자체 대출 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출로 임업인의 편의 제공 	농림수산업시 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177)
□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(농지 경작여부 가능 증빙 서류 확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빙 가능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차계약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빙 가능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원부 	농림수산업시 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177)
□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(사전융자 사업의 확대 및 구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융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임업인육성(장기수 조림, 숲가꾸기, 임야 매입, 기타사업 중 운영 자금), 사립수목원 ○ 자부담 후 잔액융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기산림소득자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융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임업인육성(전체사업) ○ 자부담 후 잔액융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기산림소득자금(순수융자사업) ○ 사후융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기산림소득자금(보조수반 융자사업), 사립수목원 조성 	농림수산업시 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177)
□ 전문임업인육성 지원 제한 및 지원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자금 융자 총누계액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모범독립가 12억원, 우수독립가 10억원, 자영 독립가 7억원 - 임업후계자 3억원 - 신지식임업인 1억원 ○ 유실수 재배 관리인 인건비 지원대상 유실수 수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밤나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자금 융자 상환잔액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(융자 총 누계액 기준 → 융자 상환잔액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모범독립가 12억원, 우수독립가 10억원, 자영독립가 7억원 - 임업후계자 3억원 - 신지식임업인 1억원 ○ 유실수 재배 관리인 인건비 지원대상 유실수 수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밤나무·호도나무 등 유실수 	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195)
□ 산림조합 특화사업 보조율 조정 및 사업선정 방식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고 70%, 자부담 30% ○ 사업자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림조합중앙회의 특화 사업 심사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의 성공확률 제고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방비 부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고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 ○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로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자체 공모하여 외부심사위원이 선정 	시 책 ('09.1.1)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156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																								
			관계 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
□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 규정(훈령) 제정	○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의 범위내에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정으로 임업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민원 및 애로 사항 해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산주에게 임산물을구입 시 인정 가능 금액 ('08) 1천만원미만 → ('09) 사업별 집행 지침에서 별도 규정 -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비 ('08) 3천만원미만 → ('09) 5천만원미만 	산림사업종합자금운영규정 ('09.1.1)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(042-481-4194)																								
□ 해외인턴 제도 도입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산림개발업체 또는 국제산림협력 지원사업에 인턴 채용 및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발인원 : 20명 - 지원비율 : 국고 50%, 기업체 50% 	'09년 예산내역서 ('09.1.1)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 (042-481-4088)																								
□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	○ 민원인이 산지구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군구 청사를 방문하여 종이 도면과 대장으로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소유 산지에 대한 산지정보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지관리 법령에서 지정한 지역 지구 현황 확인 - 개별 법령에서 변경되는 지역구역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최신 정보 유지 	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('09.상반기) 제5차 산림기본계획 ('09.6월) 산림청 산지제도과 (042-481-4145)																								
□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지원 단가 및 기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 기준 및 단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가구수</th> <th>50호 이하</th> <th>50~100호</th> <th>100~150호</th> <th>150호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마을 조성비</td> <td>10억</td> <td>12억</td> <td>14억</td> <td>16억</td> </tr> <tr> <td>사전 설계비</td> <td>45백만원</td> <td>54백만원</td> <td>63백만원</td> <td>72백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마을조성 연차별 예산편성 비율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년차 마을조성 : 50% - 2년차 마을조성 : 50% 	가구수	50호 이하	50~100호	100~150호	150호 이상	마을 조성비	10억	12억	14억	16억	사전 설계비	45백만원	54백만원	63백만원	72백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 기준 및 단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가구수</th> <th>100호 미만</th> <th>100호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마을 조성비</td> <td>14억</td> <td>16억</td> </tr> <tr> <td>사전 설계비</td> <td colspan="2">65백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마을조성 연차별 예산 편성 비율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년차 마을조성 : 30% - 2년차 마을조성 : 70% 	가구수	100호 미만	100호 이상	마을 조성비	14억	16억	사전 설계비	65백만원		농림수산업시 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휴양등산과 (042-481-4122)
가구수	50호 이하	50~100호	100~150호	150호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
마을 조성비	10억	12억	14억	16억																							
사전 설계비	45백만원	54백만원	63백만원	72백만원																							
가구수	100호 미만	100호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
마을 조성비	14억	16억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전 설계비	65백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
□ 산음 치유의 숲 개장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기 양평 소재 산음자연휴양림내에 치유의 숲 개장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예약을 받아 1일 2회, 회당 10명씩 이용 	'09. 1월 산림청 휴양등산과 (042-481-4215)																								
□ 국유 수목장림 개장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번지 국유림 10ha에 국가에서 직접 조성한 수목장림 개장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체적인 이용절차, 사용료, 관리비 등은 1월중 고시 	'09. 4월 산림청 휴양등산과 (042-481-4215)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변경 (사업공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군 농정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자체 신청에 의거 일률적 배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- 임산물산지종합센터 사업 - 펠릿제조시설 조성사업 ○ 산양삼 재배단지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고 자체에서 사업 신청하여 심사·평가에 의거 대상자 선정 - 집단화·규모화하여 경쟁력 강화 ○ 산양삼 재배단지 사업은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되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	농림수산업시 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목재소득과 (042-481-4206)
□ “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” 기계장비 사후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계장비 구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 기계장비 구입시 겸증장비 구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“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”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	농림수산업시 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목재소득과 (042-481-4206)
□ 국고보조율 변경 (국고:지방비:융자:자부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밤나무노령목관리(2:2:0:6) - 밤방제장비(2:2:5:1) - 밤작업로(2:2:3:3) - 밤나무토양개량((8:2:0:0) - 밤·잣생산장비(2:2:0:6) - 친환경방생산(2:2:0:6) - 관상수토양개량(8:2:0:0) - 조경수관정시설(5:2:0:3) - 산림복합경영(2:2:3:3:) ○ 임산물유통개선지원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산물표준화지원(2:2:0:6) - 공동선별비지원(2:2:0:6) ○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목펠릿보일러 보급(5:4:0:1) - 벌채문자로 시설지원(7:2:0:1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밤나무노령목관리(2:2:2:4) - 밤방제장비(2:2:2:4) - 밤작업로(2:2:2:4) - 밤나무토양개량((7:2:0:1) - 밤·잣생산장비(2:2:2:4) - 친환경방생산(2:2:2:4) - 관상수토양개량(7:2:0:1) - 조경수관정시설(3:2:2:3) - 산림복합경영(2:2:2:4:) ○ 임산물유통개선지원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산물표준화지원(2:2:2:4) - 공동선별비지원(2:2:2:4) ○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목펠릿보일러 보급(3:4:0:3) - 벌채문자로 시설지원(5:2:0:3) 	농림수산업시 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목재소득과 (042-481-4201,4,6)
□ 문화재복원용 목재생산림 특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재생산림 구역 지정·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산림보호위주 관리 - 구역면적 관리(비 예산) - 현지여건 감안 별채·공급 - 위치(좌표) 파악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적·체계적 대경재 생산·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경재 후계림 조성관리 - 구역면적 + 단목(60cm 이상 별도예산 계상 추진) - 기반시설 확충하여 체계적 공급 - RFID 수목관리시스템 관리 	시 책 ('09.1.1) 산림청 목재소득과 (042-481-4204)
□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(펠릿제조시설 사업 추진방식 변경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펠릿제조시설 지원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간단체(산림조합중앙회)에서 신청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펠릿제조시설 지원 사업은 자체 보조예산으로 변경 되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공모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함 	농림수산업시 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목재소득과 (042-481-4201)
□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지원제외 대상확대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 제외 대상(추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묘목구입비,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- 부지구입비 	농림수산업시 행지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19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(밤나무도 양개량 사업에서 지원대상 제외 기준 신설)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○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 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	농림수산업시 행자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19)
□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(대추·호도·떫은감 생산기반 지원 사업)	○ 묘목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삭 제> 	농림수산업시 행자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19)
□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(지원자금의 사용 용도)	○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※ 건축비, 단열공사, 기계 시설, 방제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부지구입비는 제외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※ <u>건축비(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)</u>, 단열공사, 기계시설, 방제장비,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부지구입비는 제외함 	농림수산업시 행자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19)
□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(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방식 변경)	○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 연도가 종료 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검정 및 정산은 시장·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사도지사에게 제출 	농림수산업시 행자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19)
□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(현행 법정단위로 변경)	○ 관상산림식물(야생화, 난) 등 생산 기반시설 : 평당 800천원 이내 단, 아크릴 시설은 1,000천원, 하우스 시설은 250천원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상산림식물(야생화, 난) 등 생산 기반 시설 : <u>㎡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,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,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</u> 	농림수산업시 행자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19)
□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(개인사업의 경우 지원 한도액 축소)	○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	농림수산업시 행자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19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(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반영비율 구체화)	○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시·군별 '09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	○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시·군별 '09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○ 주민소득지원사업 도별 평가결과 10% 반영하여 '09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	농림수산업시 행자침 ('09.1.1)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19)
□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 관리 협약	○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정부기관 주도로 산림보호	○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지정목적 유지·증진을 위하여 지자체장과 산림소유자간에 보호·관리 협약을 체결 ○ 보호·관리 협약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(계획면적 200ha)	'09년 예산내역서 ('09.1.1)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6)
□ 산불방지대책 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을 상향 조정	○ 「산불방지 시설, 장비 및 운영」에 대한 지자체 보조사업의 국고 보조율 : 30%	○ 「산불방지 시설, 장비 및 운영」에 대한 지자체 보조사업의 국고 보조율 : 40%	'09년 예산내역서 ('09.1.1) 산림청 산불방지과 (042-481-4253)
□ 산림보호강화사업 지자체 보조율 하향 조정	○ 산림보호강화사업 국고보조율 : 70%	○ 산림보호강화사업 국고보조율 : 60%	'09년 예산내역서 산불방지과 (042-481-4255)
□ 산림내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 국고 지원	○ 자연공원법,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이 어려움 ○ 사업추진에 국고지원 없음	○ 업무협약 체결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,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절차 등 적극 협조 ○ 산림내 목조건축물 주변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사업 국고 지원 : 100개소, 200ha	'09년 예산내역서 ('09.1.1) 산불방지과 (042-481-4255)
□ 산불방지임도 시설단가 상향 조정	○ 시설비 : 125백만원/km	○ 시설비 단가를 현실화: 188백만원/km	'09년 예산내역서 ('09.1.1) 산불방지과 (042-481-4255)
□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다양화	○ 산정상에 CCD 카메라 위주로 설치	○ 도시인근 산림, 주요 등산로, 자연휴양림 등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시설 ○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통한 야간감시, 자동감지시스템, 디지털방위계 등 첨단기술 도입	시 책 ('09.1.1) 산불방지과 (042-481-4255)
□ 소화전 시설단가 현실화 및 설계비 반영	○ 시설비 : 55백만원/개소 ○ 실시설계비 : 미반영	○ 단가현실화 : 85백만원/개소 ○ 실시설계비 : 반영	'09년 예산내역서 ('09.1.1) 산불방지과 (042-481-4255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화재진화수당 지급 대상 확대	○ 지방산림청 소속 산불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화재진화수당 미반영	○ 지방산림청 소속 산불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화재진화수당 반영(산불조심기간중 월4만원)	'09년 예산내역서 ('09.1.1) 산불방지과 (042-481-4253)
□ 참나무시들음병 방제	○ 피해도 “중” 이상인 감염목을 벌채·훈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가 심한 지역(피해도 “중” 이상 입목 본수가 30% 이상)은 소구역 모두베기 도입 ○ 산림소유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참나무류 「소구역모두베기」 실시 ○ 벌채산물은 숯·칩·톱밥 생산업체에 공급 ○ 벌채비용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금액 : 생산재적 m^3당 14~26천원 - 지급요청 : 「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산물 공급 확인서」를 첨부하여 시·군·구에 요청 <p>☞ 산림청>e-소나무재선충병신고센터>자료실>참나무시들음병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 방제 지원제도</p>	시 책 ('09.1.1)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(042-481-4269)
□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체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선충병과 일반 산림병해충으로 구분하여 예찰원과 직영방제단 등을 별도 운영 ○ 산림병해충 예찰은 인력에 의한 지상예찰 위주로 실시 ○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의 진단·처방 등 지원 시책 미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찰원과 직영방제단을 통합하여 「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단」으로 확대 개편하여 예찰 및 방제의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치계획 : 250개단, 1,000명 ○ 헬기(KA-32)에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한 「항공정밀탐색시스템」(1대)에 의한 항공예찰을 실시 ○ 생활권 침해 산림병해충의 진단 및 처방을 위한 민간 컨설팅 제도를 도입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림병해충 진단 및 처방 요청 시 가까운 나무병원에서 출동하여 조치 <p>☞ 산림청>e-소나무재선충병신고센터>자료실>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체계 강화</p>	시 책 ('09.1.1)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(042-481-4069)



<http://www.forest.go.kr>